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8
------	----

2018. 12. 1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8월 16일, 서윤기의원(찬성의원 44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8. 9. 5)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심사보류)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8. 12. 17)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윤기 의원)

1. 제안이유

- 한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왔음.
-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 발표 이후, 사회발전과 공공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자체보다는 시민 행복 증진에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행복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의 행복중심으로 서울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복”과 “행복 격차”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시민 행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함(안 제10).

- 마.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행복 격차 지표를 개발하고 그 측정 결과와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
- 아. 행복영향평가, 행복인지 예산, 행복 증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행복에 대한 논의와 관련 지수 도입 현황

- 국가간 비교를 위한 각종 통계지표는 대부분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도 이런 주류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최근 국제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경제적 번영이나 물질적 측면 외의 삶의 질이나 행복 등과 같은 정신적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UN은 2012년 국가별 행복지수(Life Evaluation Score)를 측정한 ‘제1차 세계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한 후 제2차와 제3차 보고서(2013년, 2015년)를 연이어 발간하는 등¹⁾ 행복지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1) 1인당 GDP, 기대수명, 관용, 인생선택의 자유 등을 지표로 측정하고 있으며 2016년 조사에서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55위를 기록함.

- OECD도 2011년부터 ‘더 나은 삶을 향하여(Better Life Initiative, BLI)’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36개 국가의 삶의 질을 물질적 조건과 주관적 삶의 질을 함께 발표하였음²⁾.
- 이 밖에, 부탄은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을 국가 통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선진 국가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국가별 시민행복 측정 지표〉

국 가	행복지표	측정지표
부 탄	GNH(Gross National Happiness)	9개 영역 33개 지표 (삶의 수준, 건강, 교육, 공동체 활력 등)
영 국	National Wellbeing	10개 영역 42개 지표 (개인행복감, 관계, 건강, 일, 개인재정 등)
캐나다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8개 영역 64개 지표 (건강한 인구, 생활수준, 커뮤니티 활력, 교육등)
뉴질랜드	QLS(Quality of Life Survey)	8개 영역 30개 지표 (건강과 웰빙, 범죄와 안전, 커뮤니티 등)
네덜란드	LSI(Life Situation Index)	8개 영역 19개 지표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사회참여 등)

- 한편, 국내에서도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³⁾를 비롯해 유사한

2)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는 물질적 조건(소득, 직업, 주거 등)과 주관적 삶의 질(건강상태,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을 함께 조사해 현재 웰빙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발전을 도모함.

3)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와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한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이용한 12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이처럼 세계기구와 여러 정부에서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⁴⁾.

다. 서울시와 시민행복에 대한 논의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통해 서울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⁵⁾.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과 도시 경쟁력과는 달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세계 도시간 삶의 질을 비교한 최근의 조사에서 서울은 74위를 기록하였으며⁶⁾,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머서(MERCER)가 세계 주요 도시 주재원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을 조사한 순위에서도 79위의 낮은 순위를 보였음⁷⁾.

영역, 46개 지표를 활용해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복도를 측정하였음. 그 결과 과천시 가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으며, 서울에서는 송파구(3위), 서초구(4위), 강남구(8위)가 10위 내로 조사되었음.

4) 변미리(2015, 「서울시민의 행복 체감도와 행복지표 활용방안」, 서울연구원)에 의하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체로 소득, 나이, 교육과 건강, 여가활동, 신뢰와 네트워크, 실업과 인플레이션, 개인적 특성인 성격 등 대략 7가지로 분류됨.

5)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공개한 2017년 세계 도시 경쟁력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에서 서울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6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받음.

6) Quality of Life for City 2018 (by NUMBEO)

7) 머서는 주요 도시의 주재원을 상대로 정치 및 사회적환경, 경제적여건, 사회문화적

- 서울시가 실시한 ‘2017 서울서베이’ 에서도 서울시민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97점에 불과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과는 대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⁸⁾.
-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으로 외형적 경제 성장과 실질 시민 행복감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즉, 서울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서울형 행복 지표’를 구성·측정 했으며(2015, 서울연구원),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생활상을 측정하는 ‘희망서울 생활지표’를 공개하고, 지난 4월 서울 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형 행복지표’를 개발하였음(참고자료 1).
- 또한, 매년 4만 5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서울서베이 조사 자료를 활용해 서울형 행복지표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임.
- 참고로, 최근 정부는 ‘국정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형 행복지수의 개발과 도입을 공론화했고, 종로구가 ‘주민행복정책’ 사업을 진행

환경, 의료 및 위생 여건, 학교 및 교육, 공공서비스 및 교통시스템, 여가시설, 소비자 상품, 주택, 자연환경 등의 평가영역에서 39개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빈이 9년 연속 1위를 기록함.

8) 유엔 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UN SDSN)가 소득수준,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관용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18(World Happiness Report 2018)’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을 받아 조사대상 156 개 나라 가운데 57위를 기록했음. 국가별로 구매력, 오염도, 소득대비 주거비, 생활비, 안전, 의료서비스, 교통체증, 기후 등의 항목을 통해 삶의 질 차이를 조사한 다른 조사(Quality of Life for Country 2018)에서 한국은 27위를 기록한 바 있음.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39개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실감 지방정부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주민행복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⁹⁾.

라.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1) 행복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행복을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행복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¹⁰⁾로 정의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자연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행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¹¹⁾.
- ‘행복’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조례안은 조례의 법적 범위와 물리적 한계 등을 고려한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포함해 행복을 정의한 것으로 이해됨.

9)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종로구와 경상남도 의령군, 부산광역시 동구, 경기도 광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이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위원회, 행복마을, 행복센터 등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10) 표준국어대사전

11) 현재 자치법규를 제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행복을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로 대체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는 행복의 정의는 서울시가 관련 지수와 측정지표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히 구체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안 제3조, 제6조부터 제10조)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마련 책무 등을 부여하고, 행복추구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4년 단위의 행복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도 함께 부여함.
- 기본계획에는 ▷ 행복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전략, ▷ 분야별 주요시책과 추진체계, 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행복격차 해소방안, ▷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원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하였음.
- 이처럼 서울시 행복정책의 이정표가 될 기본계획 수립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수립부터 시민의 참여와 수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4개년계획의 비전인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과 큰틀에서 일치하고 있어 행복추진 정책 수립과 관련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복 가치를 추구하는 유사 계획의 중복 수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기존의 시정4개년 계획을 비롯한 유사계획과의 차별화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안 제8조와 제9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관련 단체·기관, 자치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목표가 서울시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민·관 이해관계자의 협조는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시장의 협조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민간단체와 기업에게까지 이를 의무화하도록 한 안 제8조제2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 3) 행복실태조사, 행복지수, 행복 격차 지표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
- 안 제10조는 시민의 행복실태와 각종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이 결과를 분석·평가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 필요한 ‘행복지표’의 개발·보급, 행복지표를 지수화한 ‘행복지수’의 측정과 결과 공표, 그리고 이들 지수 측정에 따른 격차 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생활상을 측정하는 지표인 ‘희망서울 생활지표’를 측정·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서울형 행복지표’를 서울연구원을 통해 개발하였음.
- 또한, 매년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울서베이’도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조사하고 있음.
- 시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행복지표와 지수의 개발·보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행복지표와 지수가 시민의 행복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유사 지표와의 차별성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시민행복위원회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실태 조사의 활용과 평가, 행복지표와 지수의 활용, 각종 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밖에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과 유연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각종 자문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사위원회 존재여부 사전 검토와 위원회 일몰제 등 각종 위원회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¹²⁾에서도 심의사항이 유사·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을 금하고 있음.
- 시민행복위원회는 행복증진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간 격차 해소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비롯해 유사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민선 7기 시정4개년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는 ‘더 깊은 변화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음(참고자료 2).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유사기능 위원회 간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안에도 검토가 요구됨¹³⁾.

12)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이 밖에도 서울시에는 현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사항에 대한 심의·

5) 행복영향평가(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계획과 사업 등에 대한 행복영향평가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음.
- 행복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와 달리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행복영향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것도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6) 행복인지 예산(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행복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가 예산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행복인지 예산은 시민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목표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자문을 위한 ‘시민건강위원회’,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시정의 행복가치 중심 계획을 수립하는 77명 규모의 ‘시정계획자문단’이 구성·활동중임.

- 다만, ‘행복’이라는 공공 가치의 비교 대상이 없어 예산 수혜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이나 집행 및 결산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2013년부터 시행중인 ‘성인지 예산’의 경우는 비교대상이 명확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작성지침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행복인지 예산의 선도적 도입에 앞서 구체적인 행복사업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7) 행복증진 교육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

- 안 제16조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증진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행복증진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관련자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 가정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효과성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 밖에 안 제17조와 제18조는 행복증진사업과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사무 위탁과 행복증진 환경 조성을 위한 각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두고 있음.

- 이는 시민 행복증진 관련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안 부칙은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복증진 지표 및 지수의 개발과 행복영향평가 및 행복인지 예산 등 조례 제정 이후에 실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준비·예방하는 조치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현함에 있어, 행정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행복 실태 조사와 행복 격차 지표를 별도로 개발·관리하기 보다는, 행복지수 측정결과에 따라 통합해 분석·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행복영향평가’와 ‘행복증진교육’ 등은 의무 규정 보다는 재량 규정으로

운영하도록 수정함.

- ‘행복인지 예산’은 ‘행복’ 가치의 반영여부를 예산 편성에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의 의무로 명시함.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8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현함에 있어, 행정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행복 실태 조사와 행복 격차 지표를 별도로 개발·관리하기 보다는, 행복지수 측정결과에 따라 통합해 분석·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와 제12조 삭제, 안 제11조).
- ‘행복영향평가’와 ‘행복증진교육’ 등은 의무 규정 보다는 재량 규정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안 제16조).
- ‘행복인지 예산’은 ‘행복’ 가치의 반영여부를 예산 편성에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의 의무로 명시함(안 제15조).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응해야”를 “최대한 협조해야”로 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안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예산 운영)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안 제16조제1항 중 “교육을 실시한다.”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안 제17조를 제1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p>	<p>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p>
<p>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u>시민 행복 실태 및 행복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 행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u></p> <p>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제11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p> <p>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p> <p>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0조(행복지수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p> <p>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p>
<p>제12조(행복 격차 지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1조에 따른 행복지수 측정을 통해 행복 격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행복 격차 지표의 측정 결과와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p>	<p><삭 제></p>
<p>제13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략)</p>	<p>제11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③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4조(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 해야 한다.</p> <p>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5조(행복인지 예산) ①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행복인지 예산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행복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복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p>	<p>제13조(예산 운영)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삭 제〉</p>
<p>제16조(행복 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p> <p>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p>	<p>제14조(행복 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7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의 개발·측정, 제12조에 따른 행복 격차 지표 개발 및 측정, 제14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5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p>	<p>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정안과 같음)</p>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 격차”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나 생활권역에서 나타난 행복의 수준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4.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8.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구와의 협력)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행복 증진 사업들이 자치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예산에 연계되도록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수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평가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5.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예산 운영)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행복 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 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